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2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 김소희·고동진·진종오

김상훈 · 김성원 · 이인선

이달희 · 박수민 · 박정하

정연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부의 『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』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.7%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 연간 평균 개인소득 금액 또한 2,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었음.

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,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이전소 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제6조 의3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이전소득(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 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제외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	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
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	
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	
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	
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	
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	
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	
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	
·질병·양육 등 가구 특성에	
따른 지출요인, 근로를 유인하	
기 위한 요인, 그 밖에 추가적	
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	
을 감하여 산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4. 이전소득</u>	4. 이전소득(「참전유공자 예우
	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	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
	<u>수당은 제외한다)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